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04

발의연월일: 2021. 3. 11.

발 의 자: 김은혜・유경준・하태경

이종배 · 최승재 · 배준영

성일종 • 권영세 • 이양수

김용판 · 조경태 · 조태용

류성걸 · 김태흠 · 윤창현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, 공공주택사업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 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,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 공공주택사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보안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·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였다 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하였고, 미공개 내 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이에 대 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수위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

토교통부,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, 주택 등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,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정한 집행 및 불법투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,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7조제1항 중 "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, "5천만원 이하의 벌금"을 "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.

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

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

2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,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        | 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           |
| 방지대책) ①·② (생 략)          | 방지대책) ①・② (현행과 같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승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| ③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공개되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 않은 정보를 제2항 각 호에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따른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, 주택 등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니 된다.</u>                |
| 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      |
| 제57조(벌칙) ① 제9조제2항을 위     | 제57조(벌칙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</u> |
|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        | <u>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          |
|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,         | <u>그 위반행위</u>               |
|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        | 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          |
|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5천</u> |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            |
| <u>만원 이하의 벌금</u> 에 처한다.  | <u>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</u>        |
| <단서 신설>                  | 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얻은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| <u>한다.</u>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|
|                     |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외로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제공 또는 누설한 자  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2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 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,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한 자</u>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